#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09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진성준・위성곤・허 영

강선우・김 윤・박해철

한민수 · 문대림 · 이재정

김영진 · 정일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7월에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참사에 이어 2024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가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90조에 따라 전 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제88조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 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직원 중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	
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	2
으킬 수 있는 <u>정신질환자 또</u>	<u></u> 치매, 조현병, 조
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	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u>으로 정하는</u> 사람	(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
	의 정신질환과 정신 발육지
	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
	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가
	<u>인정하는</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	
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	
을 포함한다)이 <u>안전운전에 장</u>	<u>다음 각 호의 어</u>
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u>느 하나에</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 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신 설>

\_\_\_\_\_

----

- 1.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 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 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

   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 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위원 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그 밖에 운전적성판정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